2026년 제8회 건축구조 전문위원회 심의 주요결과

[1호 안건: 석남동 469-3 외 1필지, 특수구조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]

운영기관	인천광역시 서해구	심의일자	2026. 10. 21.

건축종별	[○] 신축, [] 증축, [] 대수선, [] 기타
건 축 주	성명(법인명) 신영부동산신탁주식회사

대지현황	대지위치	인천광역시 서해구 석남동		
	지번	469-3	관련지번	469-16
	대지면적	2,278.7 ㎡	용도지역(지구,지역)	제2종일반주거지역

건축물현황	건축면적	1,168.51 ㎡	건폐율	51.28 %	층수	지하 1층 / 지상 11층
	주용도	공동주택(도시형 생활주택-아파트)	구조	철근콘크리트	건축물 동수	1 동
	최고높이	34.4 m	용적률	252.16 %	연면적 합계	7,609.27 ㎡

구 분	주요 심의결과
(건축)분야	-
(구조)분야	- 보일람표 상 받침철근 표기 - 지진하중에 의한 층간변위 검토 내용(우발편심 고려된 부분)을 구조안전확인서에 작성 바람
(시공)분야	- CAP BEAM 도면에 표기 및 상세도 추가 바람
(토질 및 기초)분야	- 흙막이 스트럿 설치, 해체 순서도 명확히 표현 - CIP 직경 차이에 따른 스트럿 편심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검토 필요
(행정)사항	○ **사전검토의견 및 건축구조 전문위원회 심의의견 반영 할 것** ○ 심의내용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동의하며, 이행여부는 인·허가권자 검토·확인 하기시 바람
심의결과	[] 원안 의결 [○] 조건부 의결 [] 재검토 의결 [] 부결 ※ 작성기준(건축위원회 심의기준 9.3 관련) • 원안 의결: 상정안건에 대하여 수정없이 원안대로 의결 • 조건부 의결: 상정안건에 별도의 내용을 부가하거나 제외하는 등의 일부 조건을 부여하여 건축사가 반영하도록 하는 의결 • 재검토 의결: 상정안건을 다시 검토 보완하여 추후 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토록 의결 • 부결: 상정안건이 건축법령 등에 위반되거나 심의요건이 불충분하여 부결시키기로 의결 (단, 「건축위원회 심의기준」 2.3 가목에서 라목까지 사유에 해당하여야 함)